

정보통신부고시 제1995-121호

- 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
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적 조건 -

무선설비규칙 제5조제11항 · 제104제2항 · [별
표1] 비고 제39호에 의거 디지털방식을 이용하
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
설비에 대한 기술적조건(체신부고시 제1993-
96: '93. 11. 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5년 10월 2일

정보통신부장관

디지털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
을 하는 무선국의 기술적조건 제2호 “라”목 및
“마”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호 “사”목을 삭제
한다.

라. 기지국과 이동국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
1.32MHz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.

(1) 기지국

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±750kHz 떨어진 주파
수에서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변조전력
이 평균전력보다 45데시벨이상 낮을 것.

(2) 이동국

채널중심주파수로부터 ±900kHz 떨어진 주파
수에서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변조전력
이 평균전력보다 42데시벨이상 낮을 것.

마. 스포리어스 발사강도는 30kHz 분해대역폭으
로 측정된 최대출력 발사상태에서 평균전
력에 비하여 다음과 같아야 한다.

(1) 기지국

(가)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
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±750kHz이상
떨어진 주파수에서 45데시벨이상 낮고, ±
1.98M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60데시
벨이상 낮을 것.

(나) 869MHz이상 894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
의 주파수대에서는 60데시벨이상 낮고,
 $43+10\log(PY)$ 데시벨이상 낮을 것.

(2) 이동국

(가)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
는 채널중심 주파수로부터 ±900kHz이상
떨어진 주파수에서 42데시벨이상 낮고, ±
1.98MHz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54데시
벨이상 낮을 것.

(나) 824MHz이상 849MHz이하의 주파수대이외
의 주파수대에서는 $43+10\log(PY)$ 데시벨
이상 낮을 것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검정
신청중에 있는 장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
기준을 적용한다.